

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10. 20.

제안자 : 김정복 의원의

1. 수정이유

종합자원봉사센터 구성원의 임명권자를 명확히 하고, 자원봉사위원회의 위원 결원 시 재위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6조 제1항중 임명권자를 도지사로 명시함.
- 안 제13조제5항을 신설함.
 - ⑤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,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1항중 “약간명을 둔다”를 “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⑤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재위촉하며, 재위촉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1조 ~ 제5조 (생략)</p> <p>제6조(조직구성) ①센터에는 소장 1인, 사무국장 1인, 운영부장 1인,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<u>약간명을 둔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 ~ 제5조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(조직구성) ①센터에는 소장 1인, 사무국장 1인, 운영부장 1인, 운영요원 및 행정요원 <u>약간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.</u>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조 ~ 제12조 (생략)</p> <p>제13조(구성·운영 등) ①~④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7조 ~ 제12조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3조(구성·운영 등) ①~④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위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위촉하며, 제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u></p>
<p>제14조 ~ (생략)</p>	<p>제14조 ~ (제정안과 같음)</p>